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8일,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5.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

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의견 요지]

1.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개정).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7조는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그 대상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체취한 수산물(제1호),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제2호)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유통이 금지되는 수산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2에 따라 대게, 살오징어 등 33종의 어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고, 34개 어종에 대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이 규정되어 있으며, 꽃게 등 4개 어종에 대하여 암컷 포획이 금지되고 있음.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포획금지기간 기준]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대구	1.16~2.15	새조개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문치가자미	12.1~익년 1.31	소라	6.1~6.30(여수 삼산면), 6.1~8.31(제주), 7.1~8.31(제주 추자도), 6.1~7.31(울릉, 독도)
연어	10.1~11.30	전복류	9.1~10.31 (단, 제주 10.1~12.31)
전어	5.1~7.15 (단, 강원, 경북 제외)	코끼리조개	5.1~6.30 (강원, 경북)
쥐노래미	11.1~12.31	키조개	7.1~8.31
참홍어	6.1~7.15	가리비	3.1~6.30
참조기	7.1~7.31 (단, 유자망 4.22~8.10)	넓미역	9.1~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꽃게	6.21~8.20 (단, 서해5도서 7.1~8.31, 그 중 백령·대청·소청도는 7.16~9.15)	우뭇가사리	11.1~익년 3.31
대게	6.1~11.30	톳	10.1~익년 1.31
붉은대게	7.10~8.25 (단, 강원연안자망 6.1~7.10)	해삼	7.1~7.31
갈치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살오징어	4.1~5.31 (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고등어	4.1~6.30 중 1개월	말쥐치	5.1~7.31 (단, 정치망, 연안, 구획 6.1~7.31)
옥돔	7.21~8.20	낙지	6.1~6.30 (단, 시·도지사가 4.1~9.30 기간 중 1개월 이상 별도고시 가능)
오분자기	7.1~8.31 (제주)	명태	1.1~12.31(연중)
주꾸미	5.11~8.31	삼치	5.1~5.31
감성돔	5.1~5.31	대하	5.1~6.30
참문어	5.16~6.30 (단, 시·도지사가 5.1~9.15기간 중 46일 이상 별도고시 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지체장·체중 기준]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문치가자미	20cm	민어	33cm	청어	20cm
참가자미	20cm	방어	30cm	대게	9cm
용가자미	20cm	볼락	15cm	소라	5cm (제주, 울릉, 독도 7cm)
기름가자미	20cm	붕장어	35cm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 (제주)
감성돔	25cm	조피볼락	23cm	전복류	7cm (제주 10cm)
돌돔	24cm	쥐노래미	20cm	기수재첩	1.5cm
참돔	24cm	참홍어	42cm (체반폭)	참조기	15cm
넙치	35cm	꽃게	6.4cm	고등어	21cm
농어	30cm	갈치	18cm (항문장)	갯장어	40cm
대구	35cm	말쥐치	18cm	살오징어	15cm (외투장)
도루묵	11cm	키조개	18cm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미거지	40cm
대문어	600g (중량)				

주 *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4.1.1부터 20cm 이하로 적용하나 '24.6.1부터 '24.12.31까지 17cm 이하로 한시적 규제 유예

자료: 해양수산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암컷 포획금지 기준]

품 종	포획금지기준	품 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 대게	

자료: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와 성숙체장 등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제한은 우리나라의 어업관할권에 속하는 어업에 적용되므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유통은 금지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수산자원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이 수입수산물로 위장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예컨대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유통되어 대게 주산지 지역 어민 및 지자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경에서도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수입대게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착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그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 왜곡 등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국내 어민들은 규제에 따라 포획·채취하지 못하는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금지체장·체중 등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 금지는 사실상 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어기나 금지체장·체중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수산물이 33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입법 시 영향을 받게 되는 수입·유통의 규모 및 수입·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 소지와 입법 목적과의 형량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조문체계상 포획·채취의 금지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개정안이 인용하고 있는 제14조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이 금지될 경우 실질적인 수입 금지조치가 될 수 있어 무역분쟁 가능성 및 국내 수산물 유통업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징어 등 국내 생산 부진으로 수입이 필요한 수산물의 유통도 금지될 수 있어 국내 수급 불안 초래 및 소비가격 상승 등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